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55 | 2026.10.26. (2026.10.19. ~ 2026.10.2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조달청>은 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오는 1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육성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 및 절차,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처방 및 의약품 인도에 관한 사항,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 산업에 미래 성장 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산업, 양자산업을 추가하는「**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을 입법(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운영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기업수요 맞춤형 규제유예 등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한편 범부처 패키지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24인)**」,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0인)**」,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등 계약의 필요성과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하되, 사전에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지역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출자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하는「**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4인)**」 ,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지연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8인)**」 ,

법률의 제명을「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

의사과학자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교육·훈련제도, 연구활동 및 재정 지원, 병역제도 등을 규정하기 위한「**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한지아의의원 등 11인)**」 ,

해고가 인공지능 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경우 대체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11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경쟁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가능하면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하고,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

도심의 장기 공실 상가·업무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거전환촉진구역을 지정하고, 주거 적합성 및 안전성 심사를 전제로 건축·주차·도시계획 기준의 특례와 통합심의·인허가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도심 유희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연주의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2026년도 <국정감사>가 계속됩니다. 10.26. 4개 위원회, 10.27. 3개 위원회, 10.28. 2개 위원회, 10.29. 4개 위원회, 10.30. 2개 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 본격 시행(조달청) 6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7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 8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8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9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10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10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1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11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13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24인) 13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최기상의의원 등 19인)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0인) 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의원 등 15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1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1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4인) 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의의원 등 10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8인) 19

-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19
-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의원 등 10인) 20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의원 등 10인) · 20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1
-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한지아의의원 등 11인)..... 21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2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2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11인) 24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24
-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 등 11인)..... 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26
-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의원 등 10인) · 2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2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국정감사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조세] Global Tax Brief Vol. 2 (October 2026 Issue)
- [공정거래]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쟁점과 대응 과제
- [금융] 디지털금융 ISSUES (2026. 10. 5. - 2026. 10. 1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 본격 시행 - 4번째 강력 대책으로 공공조달 패러다임 전환... 사후 처벌에서 사전 차단으로 - 11월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 시행... 묻지마식 입찰 원천 차단 - 등록부터 계약까지 촘촘한 관리 시스템 구축... 공정 경쟁 보장하는 조달 생태계 조성	2026-10-23
-----	---	------------

조달청은 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오는 1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

조달청은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제조입찰 전환, 직접이행 의무 신설 등 개선 대책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입찰 이후 사후 조치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조달청은 올해 1월 네 번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 시장 진입 관리 강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

지난 8월부터 시범적으로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입찰보증금을 부과한 결과,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줄고 낙찰자 결정 과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하였고, 평균 낙찰 순위 역시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음. 오는 11월 16일부터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함.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는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활용해 걸러낼 예정임

또한, 2027년부터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임

◆ 상습 심사포기 업체 관리 강화... 업체정보 상시 관리체계 구축

상습적으로 낙찰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함.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연내 추진함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를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향후에도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업체 등록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상시 관리할 계획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2027-01-21 시행 예정

정부는 나노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2027-04-21 시행 예정
-----------	---------------------------------	------------------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2027-04-21 시행 예정
-----------	-------------------------------------	------------------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 등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되는 학습용데이터와의 연계 등을 의무화하며,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인 공급과 활용 기반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7-04-21 시행 예정
---------	----------------------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법인의 범위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신설함 (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교육, 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를 규정함 (안 제31조의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대리인의 지정 등과 관련된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 위반 확인 등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9조의3 신설)

산업통상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0-22 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 선정 및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67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심층조사의 대상과 심층조사를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 등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권고 결정 절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유예여부 결정 시의 고려사항과 유예의 대상 및 기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기준과 사전 공개의 내용 및 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26-10-22 시행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및 4차 이상 위반 시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 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2027-10-21 시행 예정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지정 및 안정공급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지 않고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않은 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공백을 예방하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 대한 의무를 영업실태에 맞게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19. ~2026.11.30.

경제자유구역을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육성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

①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 (안 제14조의3)

-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하여 개선이 필요한 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규정하여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함

② 경제자유구역청 기능 강화 (안 제28조제6항)

- 경제자유구역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기능을 강화하여 특구 간 연계 구심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 육성 상승효과 창출을 도모

③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안 제5조의2제4항)

-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입주업종 변경을 할 수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함
-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입주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업종 추가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

④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차등 적용 (안 별표1)

- 산업시설용지를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입지여건 등에 따라 분양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체 분양율을 제고하고자 함

※ 문의처 : [산업통상부 정책기획팀](mailto:산업통상부_정책기획팀) (전화: 044-203-4703, 팩스: 044-203-4703)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10.19. ~2026.11.09.
-------	------------------------	-----------------------------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34.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 및 절차,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처방 및 의약품 인도에 관한 사항,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 (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절차 등을 정함.

②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 (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 전자처방전의 작성·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③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 (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④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 (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운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 (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변경·중단·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평가·갱신·정기조사·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mailto:bocheon@kda.go.kr) (전화: 044-202-2612, 팩스: 044-202-3941)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22.
~2026.12.01.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공송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와 발전설비 용량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mailto:climate@kda.go.kr) (전화: 044-201-5894, 팩스: 044-201-5882)

해양수산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19.
~2026.10.30.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해운법」 제24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화주가 직접 소유·지배하지 않는 계열 물류회사를 규율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체제에서 계열회사를 통한 우회 진입 시 자문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공백이 있음

이에 대량화물의 화주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전화: 051-773-5718,\)](tel:051-773-5718)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22.
~2026.12.01.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산업에 미래 성장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산업, 양자산업을 추가함으로써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전화: 02-2224-2014, 팩스: 02-2224-2029\)](tel:02-2224-20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2026-10-20 발의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였음

이 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에 걸쳐 재입법되었고, 금년 12월 26일로 그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효기간에 대한 부칙을 삭제하여 이 법을 상시화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무위원회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24인)	2026-10-20 발의
-------	---	---------------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각종 산업·인프라 쏠림 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국내 특구제도는 소규모 분산 지정, 부처별 칸막이식 운영, 공급자 중심의 설계 및 재생에너지 전환 수단 미비 등으로 인해 신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는 광역·초광역권 핵심 성장거점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운영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기업수요 맞춤형 규제유예 등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조성 및 재정·금융·세제·인재양성·인프라·기술창업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패키지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최기상의원 등 19인)

2026-10-21 발의

기존의 지역특구 및 산업육성 제도는 개별 지역과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광역권 간 산업 연계와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규제개선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정책수단도 개별 제도에 분산되어 기업의 복합적인 투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대규모 산업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공급체계와 생활기반이 함께 조성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우수인력의 정착을 유도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역이 보유한 산업적 강점과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초광역권 단위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기업의 투자 결정부터 산업집적, 인재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규제특례와 범부처 차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광역권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역의 성장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속한 규제개선과 분야별 특례, 재정·금융·세제 지원 및 인재양성·기반시설 조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에너지의 안정적·친환경적 공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과 산업·정주 기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연의원 등 10인)

2026-10-21 발의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하위 규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자에게 호가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동성 공급자의 장 시작·마감 전 등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와 90% 이상 괴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78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5인)

2026-10-22 발의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편,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감면함으로써 시정조치의 효과가 저해되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의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제외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2026-10-19 발의

정부는 5극3특,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국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넓히며 사업확장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비수도권의 생활인프라 부족 등 유인책 부족으로 인해 기업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우수인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여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방지와 우수인력의 비수도권 근무 및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과 비수도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루고자 함 (**안 제18조의4 신설**)

재정경제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2026-10-19 발의

현행법은 경쟁입찰의 공고 방법·내용·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재공고입찰, 예산의 조기집행, 다른 국가사업과의 일정 조정,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의 예방·복구 등의 경우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중앙관서에서 홍보, 교육, 보험,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매년 반복되어 계약의 필요성과 발주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업까지 관행적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발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고기간이 단축되면 잠재적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등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어 신규·중소 업체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계약의 경쟁성과 공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등 계약의 필요성과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하되, 사전에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또한 공고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그 사유와 구체적 경위, 통상 공고기간과 실제 공고기간 및 동일·유사 계약의 최근 발주 현황을 기재한 사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중앙관서별 단축 현황의 정기 공개, 국회 보고 및 개선계획 제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계약의 경쟁성·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재정경제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6-10-19 발의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현재('26년 6월 기준) 개인 병원이 전국 병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57.2%)하며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기여하고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경우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의 병원 폐업 등으로 인해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 수행이 중단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미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지역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며 지역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2026-10-20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이 중고품 또는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임대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전력·냉각·네트워크·보안 등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수행을 지원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방식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복합적·전문적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임대와 구별됨에도 공제대상 여부가 불명확함

또한,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건축물 취득·보유 또는 공간 임대와 달리,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전력·냉각·네트워크·보안 등 특수 인프라를 수용·운영할 수 있는 특수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건축물 자체가 사업 수행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함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축물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산업의 실제 운영구조와 글로벌 경쟁 현실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고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재정경제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4인)

2026-10-21 발의

최근 고배당기업의 개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되는 등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출자비율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10% 이상의 출자비율만으로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내국법인 간 수입배당금에 대한 현행 익금불산입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뒷받침함

이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출자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의 급격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내국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제1항)

재정경제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026-10-21 발의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 고용 유지 및 기술·경영 노하우의 전수를 도모하는 제도로써, 역대 정부는 그 대상과 폭을 꾸준히 넓혀 왔음. 또한 이 제도는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을 향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과세이연 구조로서, 세금을 영구히 면제하는 제도가 아님

그런데 정부는 최근 개편안을 통해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같은 업종군 안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공제 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7년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70.1%가 경영기간 30년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제도를 믿고 승계를 준비해 온 다수 기업이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

특히 병원은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병원 폐업이 소아·분만·응급·중증의료 등 필수 의료 제공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아울러 필수의료는 분만실·수술실 등 전용 시설과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를 대체할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지역 내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세액과 기업의 승계 계획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과세요건임에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부 판단에 따라 그 범위가 변경될 수 있는 구조임. 이에 **현행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범위를 유지하고, 향후 대상 업종의 조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신설)**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026-10-22 발의

현행법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두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등이 강제로 수용당한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법인이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등을 수용당하였음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77조의4 신설)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6-10-23 발의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시설투자나 연구개발이 수반되는 산업은 투자 시점과 이익 실현 시점 간의 시차가 크고, 업황 변동에 따라 결손이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10년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액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법인세법」 및「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각각 1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이보다 짧아 결손금의 이월공제 체계와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과 일치시키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이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44조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8인)

2026-10-20 발의

최근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계약 해지·회원 탈퇴·구독 취소 등 서비스 이용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거부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수수료·위약금 등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다크패턴과 달리, 이용자가 이미 내린 서비스 종료 결정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직접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지연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50조제1항제 12호 신설 및 제99조제5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2026-10-19 발의

현행 산림 관련 법령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대응과 산림보호·경영 등에 필요한 산림장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장비의 도입부터 검사·검수, 인증, 관리·운용, 점검·정비 및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산림장비의 분류·목록화·표준화 및 성능기준, 중요산림장비의 사전 기술검토 및 도입 심의, 검사·검수 및 인증, 개인보호장비의 관리, 점검·정비 및 사고조사,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불용·폐기 및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의원 등 10인)

2026-10-19 발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마약류 또는 통제물질에서 제외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칸나비디올 성분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과 동일하게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로서 건조중량 기준으로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delta-9-tetrahydrocannabinol)의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것 또는 그 부위를 헴프로 정의하고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진흥·지원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6-10-20 발의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지정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심화,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 생활기반 시설의 노후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노후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대기오염,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환경성질환 발생 우려가 높고,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중 정주환경개선구역을 지정하고, 정주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026-10-21 발의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의 수집·활용, 산업인공지능 제품의 실증·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1인)

2026-10-21 발의

의사과학자는 임상 경험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으로 연결하는 보건의료기술 혁신의 핵심 인력임

진료와 연구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성을 획득하기까지 장기간의 교육·수련이 필요한 반면, 의료기관 내 연구에 대한 보상체계나 연구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고, 병역 이행에 따른 연구 단절 우려가 상존하여 의사과학자의 양성과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과학자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교육·훈련제도, 연구활동 및 재정 지원, 병역제도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양성·지원하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2026-10-21 발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임상 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발굴하여 기초과학과 연결하고, 그 연구성과를 다시 환자 치료와 실용화로 환류하는 의사과학자 및 중개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미국·일본 등은 일찍이 의사과학자 양성과 중개연구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지원이 부족해 보건의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과 성과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의사과학자 진로 선택부터 중견 연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군 복무, 의료기관 내 연구시간 확보 곤란 등의 문제로 연구활동의 지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과학자와 중개연구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신설하고, 중개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전주기 교육·훈련제도 구축, 연구시간 보장, 연구 연속성 확보를 위한 병역제도 마련, 실태조사 등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기술의 혁신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2026-10-23 발의

현행법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민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실손보험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이유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인바, **재난적 의료비 제도와 같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44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2026-10-20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관계에 있어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도급인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안 제14조의3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026-10-20 발의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9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11인)

2026-10-21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의 업무가 대체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규모와 업종·직종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없는 실정임. 정부도 2026년 7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업이 직접 신고하는 해고 사유 정보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해고가 인공지능 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경우 대체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사항을 분기별 통계로 작성·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등의 도입에 따른 해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안 제24조제4항 후단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2026-10-22 발의

「대한민국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의 존엄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부터 취약계층 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수차례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보장** 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7조 삭제, 제23조)

국토교통위원회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 등 11인)

2026-10-20 발의

현대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현장 시공 방식 중심에서 벗어나,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모듈러 건축은 공사기간 단축,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폐기물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등 건설생산체계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모듈러 건축에 특화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기술 개발, 산업 육성 및 보급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모듈러 건축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6-10-20 발의

현행법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일부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아 도심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한 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 39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2026-10-22 발의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업자가 공종별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가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미국과 유럽에서 활용되는 주요 공종별 분리발주 및 전문 건설사업관리(CM) 방식과 같이 직접 시공하는 업체의 참여와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설생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48조는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16조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건설 분야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계약예규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지속 여부가 해당 예규의 연장 여부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부문의 활용을 촉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경쟁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사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하고,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3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도심 유희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026-10-22 발의

최근 전월세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데, 신규 택지 조성이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 도심에는 상권 변화, 업무수요 재편 및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장기간 공실 상태에 놓인 상가·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이 적지 않으나, 현행 제도는 이를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주거시설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함

현재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려면 건축물 용도변경, 도시계획, 주차장, 소방·피난, 공공주택 매입,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 여러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각각 거쳐야 함.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과 통합적인 인허가 절차가 부족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임차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도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이 곤란함

이에 도시의 장기 공실 상가·업무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거전환촉진구역을 지정하고, 주거 적합성 및 안전성 심사를 전제로 건축·주차·도시계획 기준의 특례와 통합심의·인허가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임차·공동사업, 주택도시기금 및 재정 지원, 민간의 장기임대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임대료무기간·임대료 증액 제한·보증금 반환보증 등 공공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2026-10-23 발의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음.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자본력과 수주 우위를 앞세워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집중 수주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고 지역 건설경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등 상호 진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특히, 상호 개방 이후 영세한 지방 건설경제권에서는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외지 종합건설업체가 잠식하여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종합건설업체의 4억 3천만원 미만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조치는, 법률조항에 기준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변화된 업계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으며, 위 조치는 2026.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일몰규정으로 제도적 한계가 뚜렷함

이에,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신설하여, 위 위원회에서 직전 3개년 간의 건설사 매출 추이, 건설 자재 가격 지수 및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적정한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한시 규정인 부칙의 일몰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도급 허용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 도입 이후(89년 4천만원 미만으로 시행, 08년 3억원으로 확대), 시행령 제21조에서 3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나 발주자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의 시장 진출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기준이 개정된 지 18년이 지나 그동안 공사비 상승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제 투입 공사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10. 26.(월) 4개 위원회	법사위	<종합감사>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회 10:00
	국방위	<종합감사> 국방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회 10:00
	행안위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국회 10:00
	기후노동위	<종합감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국회 10:00
10. 27.(화) 3개 위원회	외통위	<종합감사>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국회 10:00
	복지위	<종합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감사 대상기관 전체	국회 10:00
	기후노동위	<종합감사>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10:00
10. 28.(수) 2개 위원회	정보위	국방정보본부	국회 10:00
		경찰청	국회 14:00
	성평등가족위	성평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 10:00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10. 29.(목) 4개 위원회	운영위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10:00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회 14:00
	복지위	[현장시찰] 구 침례병원 부지, 양산부산대병원	부산 오후
	정보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10:00
	성평등가족위	[현장시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센터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10:00
10. 30.(금) 2개 위원회	운영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국회미래연구원	국회 10:00
	정보위	국방방첩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방첩본부 (경기 과천) 10:00
		[현장시찰] 국방방첩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경기 과천 오후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0/26(월) 10:00	지속가능한 AI 대전환을 위한 산업 및 사회 정책 토론회	임문영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26(월) 10:00	국내생산세액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안상훈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0/26(월) 14:00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유상범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10/27(화) 10:00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김재원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0/27(화) 14:00	유교 경영 세미나 (기업의 ESG경영과 유교적 가치)	정진욱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0/27(화) 14:00	한국형 베어허그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오기형·김남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10/28(수) 07:30	서해안철도 공동메세지 및 5대 과제발표	윤준병·이개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28(수) 14:00	K-개미들의 절규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희망이다	이훈기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10/28(수) 14:00	2026 핵심·전략 광물 국회 세미나	임문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0/28(수) 14:00	플랫폼 데이터 주권에서 자율주행(AX) 직무전환까지 모 빌리티·플랫폼 산업전환: 2차 정책세미나-자율주행·AX· 직무전환	강득구·박홍배 의원 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29(목) 10:00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	권철승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0/29(목) 10:00	202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토론회	남인순·이수진 의원 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10/30(금) 13:00	대한민국 목재산업 미래비전	문금주·김용태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10/30(금) 13:30	민간기업 공기업 여성임원 확대 공동 세미나	남인순·김정재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10/26(월)	「Data+」 제2026-17호(통권 제41호)	국회도서관	
	10/28(수)	「금주의 서평」 제2026-41호(통권 제800호)		
	10/28(수)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13호(통권 제37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0/2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21호(통권 제309호)	국회도서관	
	10/21(수)	「금주의 서평」 제2026-40호(통권 제799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0/19(월)	조세	Global Tax Brief Vol. 2 (October 2026 Issue)
10/20(화)	공정거래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쟁점과 대응 과제
10/23(금)	금융	디지털금융 ISSUES (2026. 10. 5. – 2026. 10. 15.)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